

# 투자중개업자 선정기준

(주)파이어스톤자산운용

# 투자중개업자 선정 기준

제 정 2022.09.23

## 제 1 조(목적)

이 기준은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매매주문을 처리할 투자중개업자를 선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 제 2 조(적용범위)

- ① 이 기준은 집합투자재산 중 채무증권, 국내상장 지분증권 및 장내파생상품 매매주문을 처리할 투자중개업자를 선정하고 관리하는데 적용한다
- ② 상장증권 블록매매, 장외증권과 장외파생상품 매매의 경우 거래건별로 대표이사의 결재를 득하여 지정할 수 있다.
- ③ 상장공모지분증권, 장내파생상품 및 채무증권의 경우 고객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운용본부장이 지정할 수 있다.
- ④ 사모형 집합투자기구의 편입자산 매매를 위한 투자중개업의 선정에 있어서 당해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자 혹은 판매회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되 수익자간의 이해상충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투자중개업자 지정요청서 등의 합리적 근거를 확보하여야 한다.

## 제 3 조(중개회사 선정의 원칙)

- ① 회사는 중개회사를 선정함에 있어 투자자에게 최대한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.
- ② 회사는 중개회사를 선정함에 있어 자기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판매를 조건으로 매매주문을 위탁하기로 약정하여서는 아니된다.
- ③ 중개회사에 대한 수수료는 제공받는 서비스의 질과 양, 다른 중개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지급하여야 하며 정당한 근거나 사유없이 중개사간 수수료를 차별하거나 관계회사 등에 대하여 높은 수수료를 지급하는 등 우대하여서는 아니된다.

## 제 4 조(평가의 방법)

투자중개업자의 평가 방법은 다음 각 호의 부문별 평가항목의 배점한도 내에서 각 중개업자별 평가배점을 부여하고 각 항목의 합계점수를 기준으로 A, B, C, D 그룹별로 분류하여 배정할 수 있다.

1. 조사자료의 충실도 및 애널리스트의 기여도 평가 : 20 점
2. 매매체결 능력 평가 : 20 점
3. 업체탐방 및 세미나 주선 평가 : 20 점
4. 매매수수료율 평가 : 20 점
5. 마케팅 기여도 평가 : 20 점

### 제 5 조(약정배분기준)

- ① 국내상장 지분증권 및 지분증권관련 장내파생상품의 경우 분기별로 수수료를 기준으로 하며,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된 상위 10~20 개 투자중개업자에 대하여 80%이상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② 채무증권 및 채무증권관련 장내파생상품의 경우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하며, 평가결과에 따라 증권회사 및 은행은 20 개사를 선물회사는 5 개사를 선정하여 70%이상을 배정하고 특정회사의 최대 배정가능한도는 총 약정금액의 20%내로 한다.

### 제 6 조( 보관 및 관리)

- ① 준법감시인은 중개회사별 매매주문 배분계획과 실제 매매내역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소명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.
- ② 자산운용본부장은 투자중개업자 선정기준 평가 및 실행내역 자료를 5 년간 보관·관리하여야 한다.

## 부 칙

### 제 1 조(시행일)

이 기준은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시행한다.